"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정,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정신"

북 일 고 등 학 교

http://www.bugil.hs.kr

북일고등학교 제 26-118호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담 당 자	교무기획부
연 락 처	041-520-8609

FAX (041) 551-7116, (우) 311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가 정 통 신 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학생부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로, 학생의 평가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이면서 학교·교사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입니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학생부가 공정성·신뢰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시행을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 **개정 내용: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6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 시행일: 2026. 7. 29.(수)부터 시행

□ 의심사례 신고: 학생부종합지원포털 클린센터로 직접 신고
(https://star.moe.go.kr-학교생활기록부 상담-클린센터-로그인)

* 의심 사례 신고 시 안내자료로 해당 내용의 위반 여부를 확인 후 신고

□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초등 041-640-6712 중등 041-640-7214, 041-640-7216)

* 안내자료의 Q&A를 통해 세부 내용은 사전 파악 가능

(관 인 생 략)

2026. 07. 31.

북일고등학교장

교육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됩니다.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생부는 학교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로, 학생의 평가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이면서 학교·교사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입니다.
- 학생부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므로 공정성·신뢰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하여 상담 시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어,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유의사항

학교·교사는?

학교생활기록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사설 프로그램에서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학생부 민원서류 발급 시 상업적 이용 금지에 관해 안내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법 개정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4 및 제30조의6

학생은?

학생이 학생부 상담을 받는 행위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나 교육청의 진로·진학상담센터,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대입정보포털 등 공공 컨설팅 활용을 권장합니다.

- 또한 학생부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관찰 및 평가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는 공공기록물입니다. 교사에게 특정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학원은?

학생부를 수집하여 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대입 상담을 위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취득한 학생부로 자료 제작 또는 강의를 진행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또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1항

주요 위반 사례

※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음

-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에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주요 Q&A

질문 1 **고등학생입니다. 제 학생부를 가지고 학원에서 컨설팅 받는 것도 안 되나요?**

답변 학생이 학생부 컨설팅을 받는 행위는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학원이 학생부의 열람을 넘어서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다른 컨설팅 시 활용하는 등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경우, 학원이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의 학생부가 컨설팅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대학생입니다. 후배에게 기프티콘을 받고 제 학생부를 보내주었는데요, 이 경우도 위반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학생부를 일회성으로 판매한 경우는 영업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목적으로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 3 **고등학생입니다. 제 학생부를 활용하여 대입 상담을 받고 싶어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담임교사, 진로상담교사 등 학교 내에서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육청의 진로·진학상담센터, 교육부의 진로·학업 설계(togetherschool.g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정보포털(adiga.kr) 등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을 신설하여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대입 상담교사로부터 학생부 강·약점 등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제공합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질문 4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의 학생부 분석 및 컨설팅을 위해 사설 업체와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도 위반에 해당할까요?**

답변 학교가 사설 업체에 학생들의 학생부 분석이나 컨설팅을 의뢰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가 수집한 학생부를 가지고 다른 컨설팅에 활용하거나 데이터화하여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학교가 학원의 법 위반 행위에 동조·묵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처리 지침, 약관 등을 통해 학생부가 본래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5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이 학생부에 진로 관련한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안 됩니다. 학생부 기재는 교사 고유의 권한으로, 학생에 대해 관찰 및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 권한을 가진 교사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질문 6 **학생부 대입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집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전에 취득한 학교생활기록도 시행 이후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하였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나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을 얻거나 소유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대해 사실상 지배·처분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집한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7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을 활용하여 무료 대입 상담을 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학교생활기록을 활용하여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무료로 대입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가 수강생 모집 등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